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27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조은희 · 김재섭 · 이성권
서명옥 · 신성범 · 김용태
이인선 · 서천호 · 서범수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창원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등 관리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소관 기관별로 관리 정보가 산재해 있어 통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정기적인 정보 확인 업무를 고의로 피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정보와 공개·고지 정보 및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 등을 연계한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 장의 확인 업무를 거부·방해 또

는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5조제7항, 제45조의4 및 제5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몸무게)”를 “몸무게).”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를 포함한다.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2. 등록정보(제45조제7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정보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고지정보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사항,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위반 여부 등 보호관찰 관련 자료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신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③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5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3. (생략)

⑧ (생략)

<신설>

-----. 이 경우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45조의4(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2. 등록정보(제45조제7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정보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고지정보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사항,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위반 여부 등 보호관찰 관련 자료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신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⑤ (생략)

는 등록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③ 그 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